

2023년도 일본 정부(문부과학성) 장학금 유학생 모집요강

전수학교유학생

일본정부 문부과학성은 일본의 전수학교에서 전수학교유학생으로 수학할 외국인 유학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한다.

아래

1. 전수학교유학생의 정의

전수학교의 전문 과정에 재학하는 자 및 이에 앞서 일본어 등의 예비 교육을 받는 자를 말한다.

2. 모집 분야

전수학교유학생 전형에 신청하는 자는 아래와 같이 희망하는 전공 분야·학과를 선택하고, 신청서의 「일본에서의 희망 전공 분야 및 학과 등」란에 기입할 것.

(1) 아래 A~F 중 희망하는 전공 분야를 하나 선택할 것.

A. 공업 관계	B. 위생 관계	C. 교육·사회 복지 관계
D. 상업실무 관계	E. 의류·가정 관계	F. 문화·교양 관계

(2) 별지 「전공 분야 관련 주요 학과 등」을 참조하여, 선택한 전공 분야 내에 설정된 「학과 등 명」에서 희망하는 학과를 선택할 것. 제2회망까지 선택할 수 있다.

(주1) 전공 분야 A~F 중 설정된 「기타」를 선택하는 사람은 신청서의 「희망 전공 분야명」 「희망 학과명」 「희망 이유」란에 어떤 분야를 희망하는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입할 것. 또한, 아래 나열한 예시를 비롯해 「전공 분야 관련 주요 학과 등」에 기재되지 않은 학과 등의 명칭이나 주요 학습내용을 대응하는 수용 학교가 없을 경우, 선발이 되지 않거나 선발을 사퇴해야 하니 이점 유의할 것. (수용이 어려운 학과 예시) 의학, 생물학, 심리학, 비행기 조종 등

3. 전수학교유학생의 수학 내용 등

(1) 예비 교육

- ① 최초 1년간은 문부과학성이 지정하는 예비교육기관에 입학하여 예비 교육을 받는다. 수업내용은 전수학교에서 수학 시 필요한 일본어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 사정 등이다.
- ② 예비 교육을 수료한 자는 문부과학성이 지정하는 전수학교에 입학한다. 또한, 예비 교육을 수료하지 못한 경우 전수학교에 입학할 수 없고, 그 시점에서 장학금은 중지되고 귀국하게 된다.

(2) 전수학교에서의 수학

- ① 예비 교육 수료자가 입학하는 전수학교는 문부과학성이 예비교육기관 및 관련 전수학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인정하지 않는다.
- ② 전수학교유학생은 전수학교 과정 중 고등학교 졸업을 입학 자격으로 하는 전문과정에 입학하여 2년간의 전문 교육을 받는다. 졸업한 자는 졸업 증서가 수여된다.
- ③ 수업은 모두 일본어로 진행된다.

(3) 전공 분야의 변경 및 전학

- ① 예비 교육 및 전수학교에서 수학함에 있어서 전공 분야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② 예비 교육 및 전수학교에서 수학 도중에 다른 학교로 전학 가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4. 응모자의 자격 및 조건

문부과학성은 일본에서 수학하는 것을 통해 일본과 자국 간의 가교가 되고, 양국 나아가 세계 발전에 공헌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자격·조건을 만족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한다.

- (1) 국적: 일본 정부와 국교를 맺고 있는 나라의 국적 보유자일 것. 신청 시 일본 국적을 가진 자는 원칙적으로 모집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단, 신청 시 대한민국에 생활 기반을 둔 일본 국적 소지 이중 국적자에 한해 일본 입국 전(수용 대학의 학적 발생시점)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고 일본 국적을 이탈할 예정인 자는 대상으로 한다. 제1차 선고는 응모자가 국적을 선택한 국가의 일본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이하, 「재외공관」이라함)에서 실시한다.
- (2) 연령: 원칙적으로 1998년 4월 2일 이후에 출생한 자. 단, 하기 (3)의 학력조건 ③에 해당하는 자는 전수학교 입학 시점에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단, 문부과학성이 국적국의 제도·사정(병역의무·전란에 의한 교육기회의 상실 등)에 의해 자격연령 시기에 응모하지

못한 자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인적인 사정(경제상황, 가족사정, 건강상태, 대학 또는 근무처의 사정 등)은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3) 학력: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자로 한다.

① 외국에서 학교 교육 12년 과정을 수료한 자. (2023년 3월까지 이 조건을 충족시킬 예정이 확실한 자를 포함)

② 외국에서 일본의 고등학교에 대응하는 학교 과정을 수료한 자. (2023년 3월까지 이 조건을 충족시킬 예정이 확실한 자를 포함)

③ 외국에서 12년 과정 수료에 상당하는 학력인정시험에 합격한 자. (2023년 3월까지 이 조건을 충족시킬 예정이 확실한 자를 포함)

④ 이 외에 신청 시점에서 일본의 전수학교 전문과정의 입학 자격을 가진 자.

(4) 일본어 등: 적극적으로 일본어를 학습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자. 일본에 대한 관심이 많고, 일본 입국 후에도 적극적으로 일본에 대해 이해하려는 의욕이 있을 것. 또한, 원칙적으로 일본어로 전수학교 전문과정의 교육을 받으려는 자.

(5) 건강: 소정의 건강진단서 양식을 통해, 일본에서 유학하는 데 심신 모두 지장이 없다고 의사가 판단한 자.

(6) 출발 시기: 원칙적으로 2023년 4월 1일부터 4월 7일 사이에 일본 입국이 가능한 자. 거주지로부터의 출발도 4월 1일이후로 한다. 문부과학성에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고, 문부과학성 또는 수용 예비교육기관이 지정한 기간 마지막 날까지 일본에 입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발을 무효로 함.

(7) 비자 취득: 원칙적으로 일본 입국 전에 국적국 소재 재외 공관에서 「유학」 비자를 새로 취득하고, 취득한 「유학」 재류 자격으로 입국할 것. 따라서 이미 다른 재류 자격(「영주자」, 「정주자」 등)을 가지고 있더라도 재류 자격을 「유학」으로 변경한 후에 다시 입국해야 함.

또 국비 외국인 유학생 신분 종료 후, 다시 「영주자」 또는 「정주자」 재류 자격을 신청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이해할 것. 신규 「유학」 비자를 취득하지 않고 일본에 입국했을 경우, 장학금 지급이 중지될 수 있으니 주의할 것.

(8) 대상 외: 다음 항목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선발 이후에 판명된 경우에도 대상에서 제외함.

① 일본 입국 시 또는 장학금 지급기간에 현역 군인 또는 군속인 자.

② 문부과학성 또는 수용 학교가 지정한 기일까지 일본에 입국하지 못하는 자.

③ 과거 일본정부(문부과학성) 장학금 유학생이었던 자(일본 입국 후 포기한 자도 포함). 단, 문부과학성 외국인 유학생 학습 장려비(유학생 수용 촉진 프로그램 (Monbukagakusho Honors Scholarship for Privately-Financed International Students))는 일본정부(문부과학성) 장학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일본정부(문부과학성) 장학금제도 중 다른 프로그램과 중복 신청한 자. 이는 2022년도 장학금 지급 개시 프로그램 중 선발결과가 신청자에게 아직 통지되지 않은 프로그램과 2023년도 장학금 지급개시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⑤ 신청 시 이미 「유학」 재류자격으로 일본 대학 등에 재적하고 있는 자 및 자국에서 본 장학금의 신청 시부터 장학금 지급 기간 개시 전까지 사비외국인유학생으로서 일본 대학 등에 재적 중이거나 재적 예정인 자. 단, 일본의 대학 등에 재적 중이거나 재적예정인 사비외국인유학생이라도 장학금 지급기간 개시 전에 수료해 귀국할 것이 신청 시 확실하고, 재류자격을 「유학」으로 새로 취득한 후 일본으로 입국 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⑥ 장학금 지급 기간 개시 후, 일본정부(문부과학성) 이외의 기관(자국 정부기관을 포함)으로부터 장학금을 수급할 예정인 자.

⑦ 「졸업예정자」로 소정 기일까지 학력 자격 및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자.

⑧ 신청 시 이중 국적자로 일본 입국 전(수용 대학의 학적 발생시점)까지 일본 국적의 이탈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자.

⑨ 일본 입국 후, 「유학」 이외의 재류자격으로 변경한 자.

⑩ 신청할 때부터 일본 이외에서 장기간의 연구 활동(필드 워크, 인턴십 등)이나 휴학 등을 예정하고 있는 자.

(9) 기타: 일본 유학 중, 일본의 국제화에 이바지하는 인재로, 널리 지역 학교와 지역의 활동에 참가해 한국과 일본과의 상호 이해에 기여하는 한편 졸업 후에도 유학한 대학과 긴밀한 연대를 유지하며 앙케이트 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은 물론, 귀국 후에는 재외공관 등이 실시하는 각 사업에 협력함으로써, 한국과 일본의 가교 역할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자를 선발한다.

5. 장학금 지급기간

(1) 2023년 4월부터 2026년 3월까지의 3년간(일본 입국 직후부터 1년간의 일본어 예비 교육을 포함)

(2) 장학금 지급기간의 연장

전수학교 졸업 후, 대학 학부 3년차로 편입을 허가 받은 자로, 일정 기준을 만족하고 특히 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문부과학성에 의한 진학에 따른 장학금 지급기간의 연장 심사를 받고, 선발이 될 경우 장학금 지급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6. 장학금 등

(1) 장학금: 월 117,000엔을 지급한다(특정 지역에서 수학·연구하는 자에 대해서는 월 2,000엔 또는 3,000엔을 월 단위로

가산한다). 또한 일본정부의 예산 상황에 따라 연도별로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 전수학교 또는 예비교육기관을 휴학 또는 장기간 결석한 경우, 그 기간 동안 장학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2) 교육비: 전수학교 등의 입학금, 수업료 및 입학 검정료는 문부과학성이 부담한다.

(3) 여비

- ① 입국 여비 : 문부과학성은, 상기 「4. (6) 출발 시기」에 기재된 소정의 기간 중에 일본에 입국하는 유학생에게 여행일정 및 경로를 지정하여 항공권을 교부한다. 항공권은 일본에 입국하는 유학생의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국제공항(원칙적으로 국적국 내)으로부터 수용 대학이 통상의 경로로 일본 국내에서 이용하는 국제공항까지의 일반석 항공권이다. 또한 일본에 입국하는 유학생의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국제공항까지의 국내여비, 공항세, 공항 사용료, 여행에 필요한 특별세, 일본내의 여비(항공기 환승 비용을 포함) 여행 보험료, 휴대품·별송 수하물에 관련된 경비 등은 유학생 본인 부담으로 한다.
- 또한, 국적국에 재외공관이 없어 비자 신청을 위해 제3국을 거쳐서 일본에 입국하는 자, 또는 국적국에서 일본까지 직항편이 없는 자의 경우, 제3국내의 경비와 숙박비 등은 본인이 부담하고, 국적국에서 거치는 제3국까지의 항공권 및 제3국에서 수용 대학이 통상의 경로로 일본 국내에서 사용하는 국제공항까지의 일반석 항공권만을 문부과학성이 교부한다.
- 「유학생의 거주지」는 원칙적으로 신청서에 기재된 「현주소」로 판단하나, 일본 입국 전에 한국 내에서 이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일본 입국 전 주소」란에 기재된 주소를 「거주지」로 인정하여 가장 가까운 국제공항의 항공권을 마련한다.
- 비자 신청을 위해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 사정에 의해 국적국 이외의 국가에서 일본에 입국할 경우에는 항공권을 교부하지 않는다. 또한 본인 사정으로 상기 「4. (6) 출발 시기」에 기재된 소정의 기간 외에 일본에 입국하는 경우에도 입국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 ② 귀국 여비 : 문부과학성은 원칙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상기 「5. 장학금 지급기간」에 기재된 장학금 지급기간의 종료 월 내에 귀국하는 유학생에 대해 본인의 신청에 따라 항공권을 교부한다. 항공권은 수용 대학이 통상 경로로 사용하는 국제공항에서 해당 유학생의 도착지와 가장 가까운 국제공항(원칙적으로 국적국 내)까지의 일반석 항공권으로 한다. 귀국하는 유학생의 일본 내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국제공항까지의 여비, 항공세, 공항사용료, 도항에 필요한 특별세, 국적국 내에서의 여비(항공기 환승 비용을 포함), 여행보험료, 휴대품·별송 수하물에 관한 경비 등은 유학생 본인이 부담한다. 아울러, 본인 사정 또는 하기 「7. 장학금 지급 정지 사항」의 사유로 장학금 지급 기간이 종료되는 달 이전에 귀국할 경우는 귀국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 또한, 장학금 지급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해서 일본에 체재하는 경우(예: 일본에서의 진학, 취업), 일시 귀국하는 경우는 귀국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7. 장학금 지급 정지 사항

아래의 경우, 문부과학성은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또한,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 지금까지 지급한 장학금의 일부 또는 전액 환수를 명할 수 있다. 아울러 처분이 결정되기 전까지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 ① 신청 서류에 허위, 부정한 기재가 있다고 판명되었을 때.
- ② 문부과학대신에 대한 서약 사항을 위반했을 때.
- ③ 일본의 법령을 위반하여, 무기 또는 1년을 초과하는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해졌을 때.
- ④ 전수학교 또는 예비교육기관의 학칙 등에 따른 징계 처분으로 퇴학·정학·훈고 및 이와 유사한 처분을 받은 경우 혹은 제적되었을 때.
- ⑤ 전수학교 또는 예비교육기관에서 학업 성적 불량이나 정학, 휴학 등에 의해 표준 수업 연한 내에 수료가 불가능하다고 확정되었을 때.
- ⑥ 「유학」 재류자격을 새로 취득하지 않고 일본에 입국한 경우, 또는 「유학」 재류자격이 다른 재류자격으로 변경 되었을 때.
- ⑦ 다른 장학금(용도가 연구비로 특정된 것은 제외)을 지급 받았을 때.
- ⑧ 선발 후, 진학에 따른 장학금 지급기간 연장 승인을 받지 않고 상위 과정으로 진학했을 때.

8. 선고

- (1) 재외공관에서는 제1차 전형으로 서류심사,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 ① 필기시험의 수험과목(반드시 전원이 수험할 것): 일본어, 영어, 수학
 - ② 필기시험 시에는 계산기 등의 사용을 금지한다.
- (2) 제1차 선고 결과 통지는 재외공관이 별도 지정한 일시로 하여, 선발 사유는 공개하지 않는다. 또한, 제1차 선고에 합격한 자가 반드시 국비외국인유학생으로서 선발되는 것은 아니다.
- (3) 제1차 선고 합격자는 재외공관에서 문부과학성에 추천한다. 문부과학성은 재외공관에서 추천한 후보자에 대하여 제2차 선고를 행하여 선발자를 결정한다. 선고는 전공 분야별로 행한다.
- (4) 최종 선발 여부 결과는 재외공관을 통해 대체로 2023년 1월 중에 통지한다. 선발 여부의 이유는 공개하지 않는다. 또한 배치기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는 인정하지 않는다.

9. 신청 서류

신청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국적국 내 재외공관에서 지정한 기한 내에 제출한다.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

No.	서류 종류	원본 1부	사본 1부	비고
①	신청서	○	○	2023년도판 양식을 사용할 것(주4)

②	모든 출신 고등학교 및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	○	출신학교 또는 해당 국가 정부가 발행한 것 (주5)
③	모든 출신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증명서	○	○	졸업(수료)예정자는 졸업(수료)예정증명서 (주6)
④	담임교원 또는 최종 출신학교 장의 추천장	○	○	양식은 자유. 샘플 있음 (주7)
⑤	건강진단서	○	○	2023년도 양식을 사용할 것
⑥	재학증명서	●	●	대학 등에 재학중인 자만 해당.
⑦	대학입학자격 등 인정시험 합격증명서	●	●	대학 입학 자격 등 인정 시험 합격자만 제출 (주6, 8)
⑧	어학능력 증명서		● (2부)	일본어, 영어 관련 어학능력 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 사본 2부 제출. 원본은 필요 없음 (주9)

(주1) ○표 서류는 제출 필수이고, ●표 서류는 해당자만 제출할 것.

(주2) 모든 서류는 일본어 또는 영어로 작성하거나, 일본어 또는 영어 번역본을 반드시 첨부할 것.

(주3) 모든 서류는 원본 1부, 사본 2부로 각각 순서대로 정리해서 제출할 것. 그 때 신청서 내의 기재란에 누락, 결여 등의 문제가 없는지 확인 할 것. 모든 서류의 첫 페이지 우측 상단에는 반드시 반드시 ①~⑧까지의 신청 서류 번호(상기 표의 No. 참조)를 기재할 것.

(주4) 신청서에 부착하는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선명한 화질의 사진을 전용지에 인화한 것으로 크기는 3.5×4.5cm 상반신, 정면, 탈모한 사진일 것. 또한 사진의 뒷면에는 국적과 성명을 기입할 것. 신청서 파일에 가공하지 않은 여권용 원본 디지털 사진을 첨부하여, 선명한 화질의 컬러로 인쇄한 것은 가능하다.

(주5) 신청자의 최종 학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류를 제출할 것.

(a) 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졸업생 -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b) 대학교 재학생 또는 졸업생 - 고등학교 및 대학 각각의 성적증명서

성적증명서에는 학년별로 취득한 전과목의 성적을 알 수 있고, 그 성적이 몇 단계로 평가되었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 재학생의 경우 해당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입학 시부터 신청 시까지 판명되는 학기 전체의 성적증명서를 제출할 것. 선발 전까지 해당 고등학교 또는 대학을 졸업했을 경우 미제출 기간에 대한 성적증명서를 신속히 추가 제출할 것. 최종 출신 학교가 중·고 또는 초·중·고등학교 일괄교의 경우, 고등학교(후기중등교육)에 대응하는 전학년의 학업 성적증명서를 제출할 것.

(주6) 신청자의 최종 학력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할 것.

(a) 고등학교 재학생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b) 고등학교 졸업생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c) 대학교 재학생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⑥ 재학증명서

(d) 대학교 졸업생 - 고등학교 및 대학 각각의 졸업증명서

졸업증명서 및 대학입학자격 등 인정시험 합격 증명서는 졸업증서 및 합격증서 사본도 대체 가능함(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므로 원본은 제출하지 말 것). 단, 이 경우 해당 출신 대학, 시험시행기관 등의 책임자의 확인증명을 첨부할 것. 선발 전까지 해당 학교 또는 대학을 졸업한 경우, 졸업 증명서를 조속히 추가 제출할 것.

(주7) 추천장의 발행인은 고등학교 또는 대학재학생의 경우 재학중인 해당학교 또는 대학으로 하고,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생은 졸업한 해당학교 또는 대학으로 한다.

(주8) 대학입학자격 등 인정시험 합격자가 신청할 경우, 대학입학자격 등 인정시험 합격증명서를 제출하면 ② 학업성적증명서, ③ 졸업 증명서, ④ 추천서의 제출은 생략이 가능하다.

(주9) 인터넷에서 증명서를 인쇄하는 경우, 신청자의 이름 및 해당 자격 내용(레벨, 점수 등)을 포함한 페이지를 인쇄하여 제출할 것. 증명서 유효기간은 대사관 신청 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10. 불가항력

불가항력에 의해 선발 통지 전후, 언제라도 도일 일정의 변경, 장학금의 취소, 또는 본 모집 요강에 기재한 내용이 변경 될 수 있다. 또한, 불가항력이란 문부과학성 또는, 외무성(주한일본대사관·총영사관을 포함)의 합리적인 통제가 미치지 않는 사유로 천재지변, 정부(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동일) 또는 정부 기관의 행위(감염증에 관한 일본 정부 또는 각 국 정부의 출입국 제한, 입국 제한 등의 국경 방역 대책을 포함한다), 법률, 규제나 명령의 준수, 화재, 폭풍우, 홍수나 지진, 전쟁(선전 포고의 유무를 묻지 아니한다), 반란, 혁명이나 폭동 또는 파업이나 폐쇄를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11. 주의사항

(1) 일본 입국에 앞서, 일본어를 학습하고, 일본의 기후, 풍토, 습관, 일본과 모국 간 법제도의 차이, 학교의 상황 등에 대해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입국 후 장학금을 수령하기까지 약 1개월에서 1개월 반정도 소요되므로, 당장 필요한 생활 자금으로 최저 미화 2,000달러 정도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장학금은 일본 입국 후, 각자가 개설한 일본 우체국은행 계좌로 입금된다. 본 계좌 이외의 계좌로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4) 일본 입국 후에는 본인 부담으로 국민건강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것.

(5) 일본 입국 후 마이넘버(사회보장번호)카드의 취득을 권장한다.

(6) 숙소에 대하여

① 예비 교육 기간 중 유학생 숙소

원칙적으로 예비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숙소에 입주할 수 있다. 숙소에 관한 모든 비용은 본인 부담으로 한다.

② 전수학교 입학 후 유학생 숙소

유학생 숙소에서 계속해서 입주하거나, 각 전수학교가 알선하는 숙소에서 입주할 수 있다. 숙소에 관한 모든 비용은 본인 부담으로 한다.

(7) 선발된 경우, 선발된 자에 관한 정보(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배치 대학, 연구과 학부, 전공 분야, 재적 기간, 수료 후의 진로, 연락처(주소, 전화 번호, E-mail 주소))는 일본정부가 실시하는 유학생 사업(유학 중의 지원, 유학 종료자의 사후 관리, 유학생 제도 개선)에 사용할 목적으로 관계 행정 기관과 공유한다.

또한 선발된 자에 관한 정보(생년월일 및 연락처를 제외)는 일본정부가 작성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 촉진을 위한 홍보자료 등에 특히, 세계 각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귀국 국비외국인 유학생을 소개하기 위해 공표할 수도 있다.

국비외국인유학생으로 선발될 때, 일본정부 국비 외국인 유학생의 준수 사항을 정리한 서약서를 통해 이에 대한 동의를 구한다.

(8) 모집요강, 신청 서류에 병기된 영문은 편의상 붙여 넣은 것이고, 영문 표현이 일본어 문장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

(9) 이 모집요강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해 불명확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재외공관에 문의하고, 그 지시에 따를 것.

(10) 이 모집요강에 정한 내용 이외에 국비외국인유학생 제도의 실시상 필요한 사항은 일본정부가 별도로 정한다.

***주의: 대한민국 응모자의 경우 반드시 [[별지] 2023년도 일본정부(문부과학성)장학금 유학생 모집 절차 및 신고 일정(전수학교유학생)에 대한 안내를 참조하여 응모할 것. 또한, 모집요강의 경우 일본어 요강을 기준으로 함.**